

보인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보인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하‘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물론 「교육 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원칙】

1. 이 규정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2.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학생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이 규정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성의 원칙에 기반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제5조 【학교 구성원의 책무】

1.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2.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3.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및 징계

제6조 【학생선도위원회의 구성】

1.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2.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생활안전부장, 생활안전부 담당 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등을 위원으로 하되, 생활안전부장을 간사로 한다.
3.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교 내 봉사 이하에 해당되는 사안은 생활교육소위원회(이하 ‘소선도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4. 소선도위원회는 생활안전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학년 부장, 생활안전부 교사를 위원으로 한다. 단, 생활안전부 담당 교사가 사무를 주관하며 담임교사는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1. 학생선도위원회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안전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2. 소선도위원회는 ‘학교 내 봉사’ 이하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안전부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생활안전부장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3. 학생선도위원회 및 소선도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4.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 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방안
 - ②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조치

제8조 【의결 정족수】

학생선도위원회 및 소선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해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대상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징계 원칙】

학생의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해야 하며, 반드시 징계 사유, 징계 기준, 징계 재심 청구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6.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절차(신체적, 언어적 측면 모두 포함) 및 학생의 개인정보(폭력피해경험 포함)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권과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징계의 심의】

1. 학생선도위원회는 사회봉사 이상의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도 심의·의결할 수 있다.
2. 소선도위원회는 학교 내 봉사 이하의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학교 내 봉사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

며, 학생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 6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6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반드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 이수 : 단위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 및 지정된 기관에 위탁운영 하고,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 학교의 장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7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의 ‘가정학습’ 기간은 ‘사고결’로 처리한다.

제13조 【징계의 방법】

1.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안전부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봉사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징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3.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4. ‘출석정지’에 대한 생활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보호자의 책임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Wee센터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 항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해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6. 제12조에 해당한 징계처분 사실은 학생선도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추후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7. 제1항과 제2항의 ‘학교 내의 봉사’와 ‘사회봉사’는 징계이므로 일반 학생의 봉사 활동과 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14조 【징계 통보 및 진술권 보장】

1.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로부터 청취한다. (단,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3.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 한다.

제15조 【심의 확정, 징계 통보】

1.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2.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 생활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제16조 【징계에 대한 재심 요구】

1. 제12조 1~4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생활교육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는 재심의 결정 까지 그 효력을 중지한다.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붙임1]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4. 재심은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재적 위원 2/3 이상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1. 학생선도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

내에 ‘서울특별시학생 징계조정위원회’(이하‘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붙임2]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18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1.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2.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3.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하거나 성실히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사후 조치】

1.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지도한다.
2.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 고시,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한다.

제20조 【징계의 기준】

1. 학생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안의 경증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2. 학생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학교에서 정한 징계 기준(별표#2)에 의한다.

제21조 【시상】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 협의회 또는 교직원 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이사장상
2. 학교장상
3.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4.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대회상 등
5. 체육특기자상
6. 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제22조 【기준】

1. 이사장상 : 졸업 시 성적이 가장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2. 학교장상 : 졸업 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3.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
4.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
5.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합산한 결석일수가 없고 ‘지각’, ‘조퇴’, ‘결과’가 3회 미만인 자
6. 공로상 : 학급 일에 솔선수범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7. 선행상 : 품행이 방정하고 학급 일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8. 봉사상 : 품행이 방정하고 남을 위해 헌신한 자
9. 효행상 : 효성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10. 대외상 : 품행이 방정하고 학교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11. 체육특기자상 : 각종 체육활동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제23조 【시상제한】

시상은 ‘학교 내의 봉사’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이며, 결석일수가 3년간 15일 미만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24조 【체벌금지】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의 체벌이나 고발을 강요하는 행위

제25조 【교사·학생의 권리와 책임】

1. 교사의 권리와 책임

- 1) 교사의 교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교사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 2) 교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3) 교사는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 4) 교사의 교권이 침해되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마련된 교권보호위원회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2. 학생의 권리와 책임

- 1)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 2) 학생은 학적 및 학생생활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3)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고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26조 【문제행동 학생 지도 방법】

1. 방침

- 1)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
- 2)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조치 내용을 학생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3) 단계별 조치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문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4) 타임아웃 된 학생을 위한 성찰교실의 대안적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면서 문제행동 학생을 지도한다.

2. 단계별 운영 방법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계(호)	조 치	조치 내용	담 당 자
1	경고/상담	- 교사의 훈계 / 학생 상담	담당교사
2	교실 안 지도	- 벌점 부여 및 교실 뒤에 서서 수업 참여 - 생각 의자에 앉아 있기	담당교사
3	교실 밖 격리 (Time-Out)	- 성찰 교실 프로그램 참여 · 일과 중 자기주도학습 실시 · 방과 후 잔류 지도	교감 전문상담인력
4	대체 프로그램 이행	- 대체 프로그램 미이행 시 재지도 - 지도 불응 시 징계 경고 - 학교관리자 학생·학부모 상담 - 학생자치법정 교육처분 프로그램 이수	생활안전부 교감, 교장
5	징계	-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및 징계 (사회봉사 이상 징계 시 지역교육청에 위탁 교육 가능)	교장, 교감, 학생선도위원 회 임원

1) 상담 및 경고

학생이 문제행동을 했을 때 해당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하고 훈계한다.

2) 교실 안 지도

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제7장 학생생활지도평점제에 의거 벌점을 부여하고 교실 내에서 학생을 격리한 후 수업을 진행한다.

3) 교실 밖 격리(Time-Out)

교실 내에서 교사의 지도로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성찰교실로 이동시켜 성찰교실 담당자가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해당 수업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한다.

4) 학교관리자 특별 면담

성찰교실 프로그램 이행 후에도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관리자가 해당 학생 및 학부모를 특별 면담한다.

5) 징계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6) 지역교육지원청 연계 교육

사회봉사 이상 징계 시 징계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성찰교실 운영】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공간인 성찰교실을 운영한다.

1. 담당자 및 설치장소

- 1) 성찰교실 운영의 담당자는 교감으로 하며 상담 교사, 전문상담자의 도움을 받는다.
- 2) 교실에서 성찰 교실로의 학생 이동은 학교관리자, 담당 교사, 배움터 지킴이, 전문상담자 등이 담당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교 내 연락체계를 만든다.
- 3) 상담실을 성찰교실로 운영, 활용한다.

2. 교육활동 내용

- 1) 상황 파악 활동 : 학생이 자기성찰/행동이행계획서(별표#1)를 작성하여 교실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기술하고, 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본 상담 및 훈육

- 3) 해당 교과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실시
- 4)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5) 전문상담자와 연계 활동

3. 성찰교실 활동 사후 처리

- 1) 성찰 교실 관리자는 학생이 작성한 것을 해당 교사에게 전달, 필요시 교사의 피드백을 통한 상호이해를 증진한다.
- 2) 성찰교실 담당자 혹은 학교 관리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교육적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3) 성찰교실 프로그램 이행 후에도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관리자가

해당 학생 및 학부모를 특별 면담한다.

제3장 학생생활지도 평점제

제28조 【목적】

- 체벌 없는 선도 위주의 학생 생활지도로 기본 생활예절, 교칙 등 규범을 잘 지키는 생활태도를 습관화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
- 학생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올바른 생활태도를 생활화하고 바르고 합리적인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선행과 봉사정신을 고취시켜 교칙과 규범을 잘 지키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제29조 【방침】

- 전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추진방법 및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한다.
- 학생들이 학생 생활 평점 카드제 운영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납득하도록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한다.
- 벌점 부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통지함으로써 벌점부과에 따른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지도 교사는 카드 사용 시 반드시 학생의 신분을 확인한다.

제30조 【운영방법】

학생 생활지도 카드(상점제-그린 카드, 벌점제-레드 카드)를 활용하여 평점제를 운영하며, 상 · 벌점은 해당 행위가 발생하거나 타인의 신고 · 지적 · 추천이 있을 시 전 교사가 부여할 수 있다.

- 상점은 1년 누계로 적용하며,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 상 · 벌점은 생활우수학생, 생활우수학급 선정에 반영한다.
- 상 · 벌점은 교내의 각종 표창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반영한다.
- 모든 교사는 상점 기준(별표#3)에 의거하여 학생에게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경고나 훈계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교칙 위반 사항 적발 시 또는 반복적으로 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학생지도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학생 자신이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도록 해야 하며, 지도 교사는 이를 확인 후 날인하여 생활안전부에 제출한다.
- 수업태도와 관련한 벌점은 교과별 성적 평가 시 태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단, 교과별 태도평가 별도 기준 필요)

7. 생활안전부 담당 교사는 제출된 카드를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학생 생활평점 통계를 매월 담임교사에게 통보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벌점 누계에 따라 선도위원회의 회부될 수 있다.
8. 벌점 누계는 매월 및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9. 계속 위반을 하는 학생(벌점 합계가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은 학생선도위원회, 학생자치법정 또는 학년부 학생지도 프로그램에 회부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0. 학생의 벌점 상황을 학교 생활기록부 행동 발달 항목에 반영한다.
11. 벌점을 받은 학생이 선행을 하여 가산점을 받을 경우 해당 가산점만큼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12. 과벌점 학생 중 신청 학생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벌점 경감 봉사활동(시간당 1 점)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 1) 교내 외 쓰레기 줍기 및 처리 1시간 ----- 1점 경감
 - 2) 화장실 청소 및 낙서 제거 1시간 ----- 1점 경감
 - 3) 기타 생활안전부에서 지정한 활동 1시간 ---- 1점 경감
13. 벌점 합계별 조치 내용

~30점	30점~	40점~
학년부 생활지도 프로그램	학생자치법정 소선도위원회 학생선도위원회	학생선도위원회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14. 담임교사나 생활안전부 교사는 교육상 필요시 학부모를 내교토록 하여 필요한 제반조치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5. 징계 처리 후 해당 벌점은 소멸된다.(단 흡연의 경우, 적발횟수는 누적된다.)
16. 분기별 벌점 누계가 30점이 넘는 학생을 대상으로 사제동행 산행을 실시할 수 있다.
17. 벌점의 기준 및 점수는 **별표#4**와 같다.
18. 위중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단순한 벌점 부여로 학생 선도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생을 즉시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회부 여부는 소선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4장 학교생활교육

제31조 【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학교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와 휴식 장

소,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3. 각 교실의 음향 장비와 빔프로젝터, LED TV 등의 시설은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4.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32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33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34조 【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 있다.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4.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안전부장, 또는 상담교사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5. 폭력 사안이 위중하고 피해 학생이 요구하는 경우 가해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전학 조치에 처할 수 있다.

제35조 【양성평등】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상호 배려하며, 서로 존중한다.

1. 상호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학생들은 교내외 활동에서 마주하는 모든 이성에 대해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대한다.

제36조 【동아리활동】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 소질을 계발하기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 축제, 방송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38조 【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1.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39조 【휴식시간】

1.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3.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신체활동 및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위해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40조 【두발 및 용모】

두발은 정결하게 관리하며, 단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청결한 용모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

1.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2. 염색과 파마를 하지 않으며, 청결하고 단정하게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에 따라 헤어제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3. 헤어제품의 사용 및 지나친 개성 표현으로 인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
4.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으며, 문신이나 피어싱을 하지 않는다.
5. 손톱은 항상 단정히 하며, 임의적으로 기르지 않는다.
6. 두발 및 용모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갈등 상황 발생 시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1조 【교복 규정 및 착용】

재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복장 규정에 의해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생활복을 착용하며, 일과 시간 중 교내에서 사복 착용을 하지 않는다.

재학생의 교복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하며, 교복/생활복 및 체육복의 디자인, 색상 등의 변경은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된 교복선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하복

종류	디자인 및 색상	재질
셔츠	흰색. 상의 좌측 주머니에 교표 착용 어깨 및 소매선 자주색으로 처리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바지	검정색. 1TUCK	겉감 : 울 60%, 폴리에스터 40% 주머니감 : 나일론 55%, 레이온 45%

2. 동복

종류	디자인 및 색상	재질
재킷	와인색 캐시미어. 좌측 가슴에 교표 착용	모 80%, 폴리에스터 20%
조끼	와인색, 베이지색 줄무늬. 라운드넥. 줄무늬 간격 일정하게 유지된 것. 교표	모 50%, 아크릴 50%
셔츠	회색. 목밴드 및 소매단 안쪽 회색. 목깃에 단추있음. 소매에 자수 있음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바지	검정색 개버딘 원단. 1TUCK	겉감 : 울 60%, 폴리에스터 40% 안감 : 폴리에스터 100%
넥타이	회색. 교표 자수 처리	

3. 교복을 임의적으로 변형하지 않고, 변형된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다.
4. 동복은 자켓, 조끼, 셔츠, 바지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동복 착용 시 외투를 착

용할 수 있다.

5. 하복은 셔츠, 바지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복을 혼용할 수 있다.
6. 계절, 날씨를 고려하여 학생의 선택에 따라 교복(동,하복/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7. 동절기(혹한기) 날씨를 고려하여 방한용 내·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단, 외투는 지나치게 고가의 것이 아닌 단정하고 학생다운 것을 착용한다.)
8. 혹한기 방한용 외투 착용 시 활동성과 편의성을 위해 등교 시 교복 자켓을 입지 않을 수 있다. (단, 동복 1세트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생활지도 방침에 따라 일과 시간 중에는 교복 착용 원칙을 준수한다.)
9. 실용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교복(동복, 하복) 이외의 지정된 생활복을 입을 수 있다.
10. 학교에서 지정한 체육복을 착용하며, 학급 담임 교사 또는 복장 규정 담당 교사의 허가를 받아 학급 단체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42조 【각종 표찰】

1. 교표, 명찰 등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한 부분에 (교복 좌측 가슴에) 반드시 부착 또는 패용한다.
2. 학생회, 정규 동아리 등 학생모임의 뱃지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착용할 수 있다.

제43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1.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라이터, 폭죽, 머리미용기구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3)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4)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5)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6)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7)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2. 제25조 제1항의 물품을 찾기 위해 학생의 동의가 없거나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압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제44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준수 한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9. 불법취업을 금하며 정당한 청소년의 노동 침해 시 교사에게 알린다.

제45조 【정보통신 윤리】

1.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2.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3.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4.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46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학생들이 일과 시간 중 무분별하게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업분위기 저해 요인을 제거하여 수업 참여도 및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모든 학생은 원칙적으로 일과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2. 교육 활동 중 휴대전화의 무단 사용 시 적발된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3장 학생 생활평점제에 의거하여 벌점을 받으며, 담임교사에게 보관 후 하교 시 돌려받는다.
 3. 일과 시간 중 교육 활동에 필요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는 담당 교사의 지도 하에 사용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참여하여 제·개정한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교육 활동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 압수의 요건과 기간, 반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 가. 모든 학생은 등교 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임교사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학급 지정장소에 보관하고, 하교 시 학생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나. 일과 시간 이후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5. 시험기간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아동학대 금지】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학교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한다.

제48조 【안전】

1.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2. 학교는 학년 초에 학교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 계획에 제시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제5장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제49조 【운영방법】

학생들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

1. 생활안전부에서는 흡연 학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 흡연학생 적발 시에 모든 교사는 생활안전부에 해당 사실을 알리며, 다음 각 항에 의거 조치한다.
 - 1) 흡연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 2) 학부모에게 연락 후 교내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3) 반성문, 금연 및 봉사활동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 4) 1차 적발 시 흡연학생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5일간의 교내봉사를 지시한다.
- 5) 흡연학생의 동의를 구하여 무료 금연침 시술을 받도록 지도한다.
- 6) 2차 적발 시 학부모에게 연락 후 금연학교 또는 지역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며 금연수료증을 제출토록 한다.
- 7) 2차 적발 시 소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유무를 심의, 결정한다.

제6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5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생생활 규정 제·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 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 및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7.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해야 한다.

제51조 【개정안의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 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2) 학생 또는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 3) 학부모회 위원 1/3 이상의 동의
 -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2.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2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3조 【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자문을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4조 【교육 및 연수】

학교의 장은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공표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학부모에게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제·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55조 【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에 필요한 준거를 마련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3. 0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8년 11. 26일에 개정
- 이 규정은 2008년 12. 0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0년 03. 0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0년 10. 15일에 개정
- 이 규정은 2010년 10.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2. 23일에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12.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09.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01. 31일에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03. 0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0. 08일에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10.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01. 28일에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03. 02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재심 청구서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학생과의 관계]	
	대상 학생	성명		소속	()학년	()반	()번
조치 결과							
조치 결과가 내려진 날	20 년 월 일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	20 년 월 일						
청구의 목적 및 이유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보인고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 귀중							

[붙임2]

퇴학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서

청구인 (재심 요청자)	성명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주소			
	퇴학 조치된 자와의 관계	본인 (), 보호자 () ※ 해당란에 ○표 ※ 보호자인 경우 퇴학 조치된 자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구체적으로 쓰 십시오.		
피청구인 (퇴학 조치한 학교)	교장명		학교명	
	학교 소재지			
퇴학 조치된 날	20 년 월 일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			
청구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청구 이유 (재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표 #1 >

자기 성찰 / 행동 이행 계획서

인적 사항	학 번		성 명		일 시		지도교사확인

나 자신 돌아보기 / 앞으로의 나의 행동은?

선생님!!! 저... 할 말 있어요.(건의사항, 고민 등 자유롭게 써주세요)

별표 #2 >

징계기준

구분	항	행위 내용	징계			
			학교 내 봉 사	사 회 봉 사	특 별 교 육	퇴학 처분
예 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2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			
	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	●	●	
	5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준 법	6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	●
	7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8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	●	●
	9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10	인원점검 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			
	11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			
	12	학교 출입 시 월장, 무단 외출한 학생	●			
	13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14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15	사법기관에 구속 석방 된 학생	●	●	●	●
	16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17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18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19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20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21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22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2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24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25	백지 동맹을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26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구 분	항	행 위 내용	징 계			
			학 교 내 봉 사	사 회 봉 사	특 별 교 육	퇴 학 처 분
근 태	27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를 한 학생	●			
	28	무단결석,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29	무단가출한 학생	●	●	●	
	30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	●		
	31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	●	●	
	32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	●	●
약 물	33	흡연 또는 음주를 1회 한 학생(담배, 라이터 소지자 포함)	●			
	34	흡연 또는 음주를 2회 한 학생	●	●		
	35	흡연 또는 음주를 3회 한 학생	●	●	●	
	36	흡연 또는 음주를 3회 이상한 학생		●	●	●
	37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폭력	38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	●	●	●
	39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	●	●
	40	욕설을 남용하거나 싸움을 한 학생	●	●		
	41	집단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	●	●	●
	42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	●	●	
	43	상 · 하급생간에 폭력을 행한 학생	●	●	●	
퇴 폐 행 위	44	도박을 한 학생	●			
	45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46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47	음란물을 제작, 출연, 유포, 소지 또는 시청한 학생	●	●	●	●
	48	불건전한 이성 교제, 성폭력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49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	●		
금 품	50	금품과 관련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51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52	금품을 강탈, 갈취 또는 사취한 학생	●	●	●	●

구분	항	행위 내용	징계			
			학교 내 봉 사	사 회 봉 사	특 별 교 육	퇴학 처분
집단	53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54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	●	●	●
	55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56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57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58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기타	59	학년 구분 없이 3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각종 처벌 한다				
	60	징계 기준 외의 것은 선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별표 #3>

상 점 기 준

구분	항	행 위 내 용	점수
상점	예절	1 공손하고 예의가 바른 학생	1
		2 교내 방문객에게 친절한 학생	1
	준법	3 휴지, 껌, 쓰레기 등을 줍는 학생	1
		4 습득물을 신고한 학생	2
		5 폭력, 집단따돌림 등 교내 문제를 신속히 선생님에게 알리거나 막리는 경우	2
	수업	6 수업 참여도가 높은 학생(과제 수행 및 발표력이 뛰어난 학생)	1
		7 수업매체 설치 및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학생	1
	생활	8 학교의 명예와 위상을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드높여 교외 표창을 받은 학생	3
		9 외부에서 전화나 서신으로 칭찬을 받은 학생	2
		10 교내외 행사(축제, 체육대회 등)에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한 학생	2
	봉사 활동	11 불우이웃, 학생 돕기를 실천한 학생	3
		12 학급 및 학교환경에 노력한 학생	2
		13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봉사한 학생	2
	기타	14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매달 모범학생을 추천)	3
기타 위 사항에 상응한 행위를 한 학생은 그에 상응한 상점을 부여한다.			

별표 #4>

벌점기준

구분	항	행위내용	점수
별점	예절	1 다른 사람에게 옥을 하는 행위	1
		2 언행이 불손한 행위	2
		3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진정 또는 통보된 경우	3
		4 공중도덕을 위반한 경우	2
		5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경우	5
		6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하는 경우	7
		7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20
	준법	8 교복을 입지 않거나 사복을 착용한 경우	2
		9 교복 및 복장 착용 불량(문신, 피어싱, 복장 규정 위반 등)	1
		10 명찰 미부착한 경우	1
		11 출석 점검 시 대리로 대답하는 경우	3
		12 월장 행위를 하는 경우	5
		13 무단횡단	5
		14 등하교 시 오토바이에 탑승하는 행위	7
		15 징계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7
		16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0
		17 사법기관에 구속 석방 된 학생	10
		18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10
		19 타인의 재산을 절도하거나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10
		20 교실 내에 매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2
	수업	21 타인의 재산을 절도하여 상업행위를 하는 학생	15
		2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20
		23 공공 문서 위, 번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 대여한 학생	10
		24 미성년자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6
		25 교내 휴대전화 소지 및 통화	5
		26 교내에서 사행성 행위를 하는 학생(판치기, 짤짤이 등)	3
		27 교내 공공기물을 파손한 학생	5
		28 수업준비 미비 행위(준비물, 과제물, 체육복 등)	2
		29 수업태도 불량 (교과와 관련 없는 행위 등)	2
		30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2
근태	근태	31 수업을 거부한 학생	5
		32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10
		33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행위	2
		34 시험을 거부한 학생	5
		35 백지 동맹을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7
		36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10
	흡연약물	37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한 학생	3
		38 무단결석,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5
		39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10
	40	재학 중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흡연에 관한 선도규정은 별도항목으로 처리함(제8장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참조)	10